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(안)

I 개정의 필요성

- 본부(통화정책국)의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개정내용 반영
 -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

II 개정 내용

- 특별지원한도 운용기간 연장(제6조제2항)
 - 2019.8월말 종료 예정인 특별지원한도의 운용기간을 2년 연장
- 특별지원한도 지원비율 조정(제6조제2항, 제3항, 제4항 및 제7항)
 - 특별지원한도 지원비율을 25%에서 50%로 상향 조정
 - 이에 따라 업체당 배정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

III 시행 일자

- 2019.9.1일부터 시행